

TRADE & ORIGIN REPORT



- ① **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실태**
- 기업의 애로와 대응을 중심으로 -
- ② **2025년 1분기 對미 수출 급증품목
분석**
- 축전지 부분품을 중심으로 -
- ③ **트럼프 2기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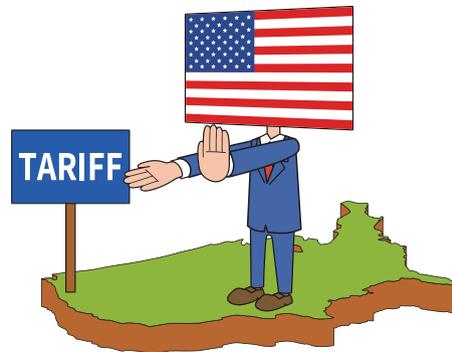
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실태

- 기업의 애로와 대응을 중심으로 -

권민경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장

1. 조사 배경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WTO 체제하의 전통적 수입규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수입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변화된 통상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획하였다.



2. 조사 설계 및 방법

조사는 분기별로 주요 통상 현안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1분기에는 “신통상환경 속 수입규제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내 수출기업 전반으로, 총 1,009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908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견기업(80개), 대기업(13개), 기타(8개) 순이었다. 설문 문항은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를 참고하여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구분	조치	설명
비관세 조치	관세 부과 (무역규제조치 관련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에 따른 일반적 관세 부과 조치 - ex) 미국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무역규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관세조치 • 상계관세조치 • 세이프가드조치
	선적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 전 검사 • 통관상 세관의 특정 요구 • 기타 절차상 요구
	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원산지기준 •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 차이 • 원산지증명, 표시, 검증 • 불명확한 원산지규정 등
	동식물위생검역(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에 따른 수입 금지/제한 •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구 • 적합성 평가 • 기타 위생 요구 등
	무역기술장벽(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관련 수입 허가/라이선스 •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구 • 적합성 평가 • 기타 제품 안정성, 품질 요구 등
	수량제한조치 (SPS, TBT 관련 조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쿼터, 금지, 허가 • TRQ 등
	가격통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수입 가격 조치 • 수입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및 경쟁 관련 조치 • 무역 관련 투자 조치 • 유통제한 • 판매 후 서비스 제한 • 보조금 • 정부조달제한 • 지식재산권 등



3. 조사결과

① 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수입규제 애로사항 : 1위 관세부과조치, 2위 원산지규정, 3위 선적전 검사 등 통관절차

국내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관세부과(33.2%)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원산지규정이 19%,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가 11.8% 순으로 집계되었다. 1~3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관세부과가 20.3%로 최상위를 유지했고, 원산지규정 19.6%,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14.7%, 무역기술장벽(TBT) 8.5%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관세와 원산지 관련 규제가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규제로 느끼는 수입 조치는?

< 1순위 응답 >

관세 부과(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335건	33.2%
원산지규정	192건	19%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119건	11.8%
무역기술장벽(TBT)	59건	5.8%
가격통제조치	37건	3.7%
무역구제조치	32건	3.2%
수량제한조치(SPS, TBT 관련 조치 제외)	18건	1.8%
동식물위생검역(SPS)	17건	1.7%
기타	200건	19.8%
합계	1,009건	100%

기업이 규제로 느끼는 수입 조치는?

< 1~3순위 종합 >

관세 부과(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448건	20.3%
원산지규정	432건	19.6%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324건	14.7%
무역기술장벽(TBT)	187건	8.5%
가격통제조치	116건	5.3%
무역구제조치	104건	4.7%
동식물위생검역(SPS)	65건	2.9%
수량제한조치(SPS, TBT 관련 조치 제외)	57건	2.6%
기타	475건	21.5%
합계	2,208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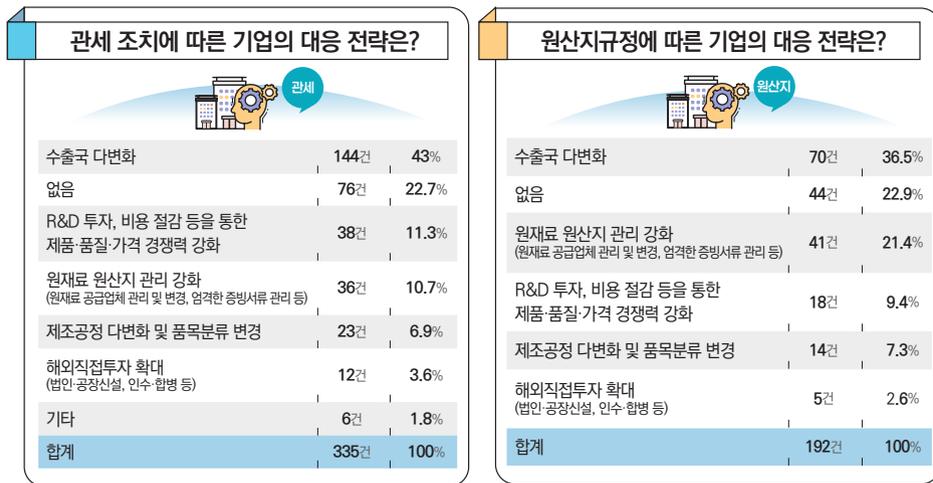
출처 : '신통상 환경 속 수입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인포그래픽 자료 발췌

② 수입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 1위 수출국 다변화, 2위 없음, 3위 비용절감

기업들은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부과에 대해서 애로를 호소한 기업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수출국 다변화'가 43%로 가장 선호되는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22.7%의 기업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즉각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 외에도 R&D 투자 및 비용 절감(11.3%),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10.7%) 등의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애로를 호소한 기업들도 대응전략으로 '수출국 다변화'가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응 전략이 없다'는 응답이 22.9%,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가 21.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의 국가별 관세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공급망 재편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응전략이 없다'는 응답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통상환경 급변 속에서 수출전략 수립 자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신통상 환경 속 수입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인포그래픽 자료 발췌

③ 기업 애로사항의 구체적 실태와 중소기업의 부담

기업들은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도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응답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수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운영상의 복잡성'과 '행정적 부담'을 크게 호소하였다.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급변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원산지규정의 경우 모호성과 엄격성, 그리고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수출국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규제 대응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 조치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업 A

반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해당 반제품을 완제품화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를 근거로 반제품의 단가 인하를 요청하여 대응이 어려움

기업 B

현재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 우려됨

기업 C

미국의 관세 조치가 빠르게 변화, 확대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하느라 인력 및 시간이 낭비되고 있음

기업 D

미국 지사가 캐나다에서 OEM 제품을 수입하여 유럽에 재판매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로 인해 마진 및 판매가 책정이 어려움

원산지규정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업 A

한-미 FTA에 따른 특혜원산지와 별개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규정 및 Ruling 제도에 대한 부담이 있음

기업 B

미국 수출 시, FTA에 따른 특혜를 받더라도 일부 부품이 중국산일 경우, 추가 관세율 부과 받거나 원산지 조사를 받는 사례 발생

기업 C

원산지와 관련하여 원재료 산국의 생산 관련 근무실래지료, 인사자료, 디테일한 생산 정황 등 제출하기 곤란한 서류를 요청 받아 대응이 어려운적이 있음

기업 D

수출규에 따라 썬어스기 등 경미한 차이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기업 E

중소기업 입장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가 엄격하고 불명확하여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수입국 세관의 임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아 불확실성이 큼

출처 : '신통상 환경 속 수입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인포그래픽 자료 발췌

4. 시사점

2025년 1분기 수출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와 정책으로 인해 [관세부과] 조치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원산지규정] 관련 애로사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원산지규정]에 따른 애로사항 중에서는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모호성¹⁾,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차이, 미국의 e-Ruling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기업들은 관세 및 원산지규정을 가장 큰 애로로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소기업이란 점을 바탕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강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는 현재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01조, IEEPA 등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인 실질적 변형 기준을 활용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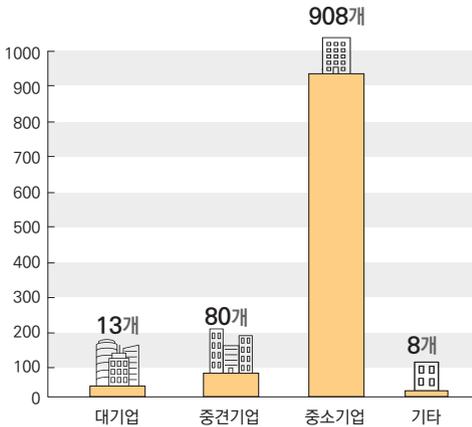


기업 설문 개요

개 요 :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환경 하에서 어떤 수입 조치를 규제로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총 1,009개 기업 응답)
 기 간 : 2025년 3월 10일 ~ 2025년 3월 28일(약 3주)
 문 항 : 수입 조치 항목은 UNCTAD 비관세 조치 분류에 관세 조치를 반영하여 구성

- 관세 조치** - 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비관세 조치 - 무역구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 원산지규정
 - 동식물위생검역 (SPS)
 - 무역기술장벽 (TBT)
 - 수량제한조치 (SPS, TBT 관련 조치 제외)
 - 가격통제조치
 - 기타

설문 대상 기업 규모 (단위:개)



기업이 규제로 느끼는 수입 조치는?

< 1~3순위 종합 >

관세 부과(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448건	20.3%
원산지규정	432건	19.6%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324건	14.7%
무역기술장벽(TBT)	187건	8.5%
가격통제조치	116건	5.3%
무역구제조치	104건	4.7%
동식물위생검역(SPS)	65건	2.9%
수량제한조치(SPS, TBT 관련 조치 제외)	57건	2.6%
기타	475건	21.5%
합계	2,208건	100%

기업이 규제로 느끼는 수입 조치는?

< 1순위 응답 >

관세 부과(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335건	33.2%
원산지규정	192건	19%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119건	11.8%
무역기술장벽(TBT)	59건	5.8%
가격통제조치	37건	3.7%
무역구제조치	32건	3.2%
수량제한조치(SPS, TBT 관련 조치 제외)	18건	1.8%
동식물위생검역(SPS)	17건	1.7%
기타	200건	19.8%
합계	1,009건	100%

기업의 대응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	391건	38.8%
없음	256건	25.4%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125건	12.4%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원재료 공급 업체 관리 및 변경, 엄격한 증빙서류 관리 등)	123건	12.2%
제조공정 다변화 및 품목분류 변경	61건	6%
해외직접투자 확대 (법인·공장 신설, 인수·합병 등)	40건	4%
기타	13건	1.3%
합계	1,009건	100%



관세

최근 세계 주요국 관세 관련 조치



최근 미국 주요 관세 조치 (타임라인)

2025. 02. 04.	중국	IEEPA에 따라 펜타닐 관세 10% 부과
2025. 03. 04.	중국	펜타닐 관세 10% → 20%로 인상
2025. 03. 04.	캐나다, 멕시코	IEEPA에 따라 25% 마약·이민 관련 관세 부과 * 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
2025. 03. 07.	캐나다, 멕시코	USMCA 협정 적용 품목 및 자동차는 마약·이민 관련 관세 일시 면제
2025. 03. 12.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 부과
2025. 04. 02.	전세계	IEEPA에 따라 10% 보편관세(4.5 발효) 및 국가별 상호관세(4.9 발효) 발표 * 주요국 관세율: 한국 25%, 중국 34%, EU 20%
2025. 04. 03.	자동차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 부과
2025. 04. 09.	중국	중국 상호관세 34% → 84%로 인상 발표
2025. 04. 10.	전세계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중국 제외)
2025. 04. 10.	중국	대중국 상호관세 125%로 재산정
2025. 05. 02.	중국	중국/홍콩 소액 면세 기준 폐지
2025. 05. 03.	자동차 부품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 부과
2025. 05. 12.	중국	미·중 합의로 대중국 상호관세율 115% 인하(125% → 10%)
2025. 06. 04.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존 25% → 50%로 인상

중국의 반응

2025. 04. 04.	미국 수출품에 34% 관세 맞을
2025. 04. 09.	34% → 84%로 상향
2025. 04. 11.	84% → 125%로 상향
2025. 05. 12.	미·중 합의로 대미국 관세율 10%로 완화



캐나다의 반응

2025. 03. 04.	미국 수출품(208억불)에 25% 보복관세
2025. 03. 10.	온타리오 주 정부,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수입 전력에 25% 추가 관세(다음 날 일시 유예)
2025. 03. 13.	미국 수출품(207억불) 25% 철강 보복 관세
2025. 03. 23.	867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예고
2025. 04. 09.	USMCA 미적용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발효

멕시코의 반응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 재부과 여부에 따라 시행일 및 세율 확정 예정



관세 조치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	144건	43%
없음	76건	22.7%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 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38건	11.3%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 (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및 변경, 엄격한 증빙서류 관리 등)	36건	10.7%
제조공정 다변화 및 품목분류 변경	23건	6.9%
해외직접투자 확대 (법인·공장신설, 인수·합병 등)	12건	3.6%
기타	6건	1.8%
합계	335건	100%

관세 조치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반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해당 반제품을 완제품화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를 근거로 반제품의 단가 인하를 요청하여 대응이 어려움



기업 B



현재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 우려됨

기업 C



미국의 관세 조치가 빠르게 변화, 확대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하느라 인력 및 시간이 낭비되고 있음

기업 D



미국 지사가 캐나다에서 OEM 제품을 수입하여 유럽에 재판매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로 인해 마진 및 판매가 책정이 어려움

원산지



수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란?

✓ 엄격하거나 불명확한 원산지규정

✓ 특혜, 비특혜원산지 규정 차이

✓ 상대국 비특혜원산지 규정의 모호성, 엄격성

✓ 지나친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 요구

✓ 원산지증명, 표시, 검증 관련 문제 등

원산지규정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한-미 FTA에 따른 특혜원산지와 별개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규정 및 Ruling 제도에 대한 부담이 있음



기업 B



미국 수출 시, FTA에 따른 특혜를 받더라도 일부 부품이 중국산일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원산지 조사를 받는 사례 발생

원산지와 관련하여 원재료 산국의 생산 관련 근무실 대자료, 인사자료, 디테일한 생산 정황 등 제출하기 곤란한 서류를 요청 받아 대응이 어려운 적이 있음



기업 D



수출국에 따라 찍어쓰기 등 경미한 차이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중소기업 입장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가 엄격하고 불명확하며 대응하기가 어려워, 특히, 수입국 세관의 임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아 불확실성이 큼



원산지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	70건	36.5%
없음	44건	22.9%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 (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및 변경, 엄격한 증빙서류 관리 등)	41건	21.4%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 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18건	9.4%
제조공정 다변화 및 품목분류 변경	14건	7.3%
해외직접투자 확대 (법인·공장신설, 인수·합병 등)	5건	2.6%
합계	192건	100%



2025년 1분기 對美 수출 급증품목 분석

- 축전기 부분품을 중심으로 -

구지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미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고율의 관세 부과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미국의 무역수지는 4,254억 8,768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역시 1분기 기준 미국으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對美 수출 전체는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산업군 전반의 일률적 하락이 아닌 품목별로 명암이 엇갈린 결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3대 산업군 중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은 감소한 반면,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전자전기제품의 수출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2025년 1분기 우리나라의 산업군별 對미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

산업군(MTI 1단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기계류	14,107,736	-11.6	3,782,925	-2.9	10,324,811
전자전기제품	8,001,445	18.0	2,627,622	12.1	5,373,823
화학공업제품	2,726,827	-6.5	2,017,974	-6.6	708,853
철강금속제품	1,713,389	-0.6	585,095	10.3	1,128,294
광산물	1,508,781	5.9	4,639,707	-18.2	-3,130,92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20,488	5.0	191,139	-3.4	629,349
농림수산물	538,278	23.6	2,670,611	8.3	-2,132,333
생활용품	471,935	-0.3	245,863	-2.1	226,072
섬유류	309,078	-6.6	82,868	-10.4	226,210
잡제품	108,842	-10.2	109,712	-8.0	-870
총계	30,306,799	-2.1	16,953,516	-4.4	13,353,283

자료 : 관세청

* MTI : 산업자원부 품목분류표(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의 약칭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관련 HS Code를 연계하여 재구성한 체계

** 2025년 수출금액 순으로 내림차순

2. 2025년 1분기 對미 수출증가품목

전자전기제품은 2025년 1분기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품목군 중 하나였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건전지 및 축전지, 전력용기기 등 고부가가치 ICT 관련 품목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이는 미국내 제조업 재건 기조와 함께, 관세율 부과가 예고된 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래 표는 한-미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품목¹⁾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전자전기제품의 주요 품목을 보여준다.

1) FTA 적용에 따라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어 실제 FTA 활용 실익이 발생하는 품목을 일컬음



[2025년 1분기 전자전기제품의 對미 수출 증가율 상위 품목 - TOP 10]

(단위: 천불, %)

HS 6단위		2025년 1분기 수출금액	2024년 1분기 수출금액	증가율
853649	기타 계전기	7,911	608	1,200.8
850790	축전지 부분품	116,241	20,312	472.3
850432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	1,135	224	407.8
853521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자동차단기	10,707	2,565	317.4
8531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3,376	877	285.1
853590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10,140	2,797	262.5
853529	기타 자동차단기	11,314	3,954	186.2
854411	구리로 만든 권선(捲線)용 전선	9,979	3,616	176.0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유입식 변압기	150,009	66,727	124.8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9,307	4,401	111.5

자료 : 관세청

증가율 상위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축전지 부분품, 변압기, 자동차단기 등으로 대부분 85류 전기기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 적용 시 최대 3.5%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어 FTA 특혜관세 적용이 해당 품목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전기제품 수출 증감률 상위 10대 품목의 미국측 수입 세율]

(단위: %)

HS 6단위	기본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853649	2.7	0
850790	3.4~3.5	0
850432	2.4	0
853521	2.7	0
853110	1.3	0
853590	2.7	0

HS 6단위	기본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853529	2	0
854411	3.5	0
850423	1.6	0
903210	1.7	0

자료 : USITC

이 중 축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은 높은 수출 금액과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품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전지(accumulator)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장치로 연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이온전지 등을 일컫는다. 주요 부분품으로는 배터리 분리막, 용기, 납판, 납격자 등이 있으며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고기능성·고안정성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재이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미래형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산업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품목으로 평가된다. 우리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에 안정적으로 축전지 부분품을 공급,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으로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제8507.90호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

(단위: 천불)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8507.90	부분품	33,085	20,409	116,241	
	1000	격리판	16	124	4
	9000	기타	33,069	20,286	116,237

자료 : 관세청





3. 美 통상변화 속 축전지 부분품의 수출 기회와 대응 전략

미국은 축전지 부분품을 납 축전지(lead-acid storage batteries)의 것(HS 8507.90.40.00)과 기타(HS 8507.90.80.00)로 구분하고 있으며, 두 품목 모두 무역법 제301조와 對中 관세율에 의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제8507.90호의 미국측 수입 세율]

(단위: %)

HS 6단위	품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무역법 제301조 세율	무역확장법 제232조 세율
8507.90	부분품:				
40	납 축전지의 것	3.5	0	+25	+25
80	기타	3.4	0	+25	+25

자료 : USI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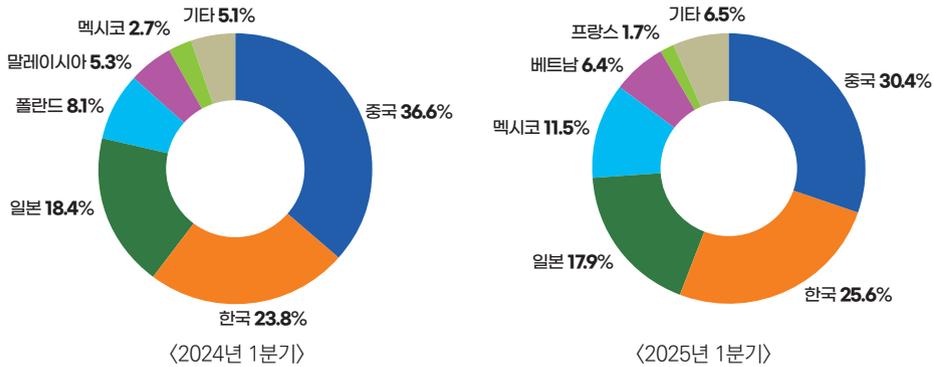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²⁾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으로 활용되는 축전지 부분품은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으며, 對美 수출기업은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축전지 부분품 수입국으로 2025년 3월 수입액 기준 중국(30.4%), 한국(25.6%), 일본(17.9%), 멕시코(11.5%), 베트남(6.4%) 등으로부터 축전지 부분품을 수입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은 2024년 1분기 23.8%에서 2025년 1분기 25.6%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산 축전지 부분품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발간일(6월 30일)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25% 추가 관세 부과 중

[제8507.90호의 미국측 주요 수입국 현황]



자료 : USITC

따라서 우리 기업은 기존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품질 관리와 원산지 관리 등 전반적인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지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對미 수출 비중이 높고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 등 높은 통상 리스크가 존재하는만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4. 마치며

2025년 1분기 對미 수출 동향은 전반적인 수출 감소 속에서도 품목별 수출 성과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자전기제품군은 미국 내 산업 정책 변화와 對중 견제 기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축전지 부분품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서 높은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對미 수출 여건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對미 수출기업은 무역확장법 및 통상법 관련 정책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출품목별 규제 리스크 분석 및 대체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검증 요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업 간 검증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 애로 해소 지원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 수출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품목별 FTA 활용도 제고와 구조적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對미 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사전적 통상 리스크 대응 체계 확보는 향후 對미 수출 경쟁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매 분기 산업별 수출증가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이슈를 분석한 ‘수출증가품목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FTA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활용 효과 극대화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수출증가품목 이슈리포트]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the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수출증가품목 이슈리포트' (Export Increase Item Issue Report). It features a thumbnail for the '2025년 1분기 수출증가품목' (2025 1st Quarter Export Increase Item) report, which includes an 'e-book보기' (e-book view) button. Below the thumbnail is a list of reports:

번호	리포트	원문보기
1	ISSUE REPORT 수출증가품목(미국) 25.1분기.pdf	원문보기
2	ISSUE REPORT 수출증가품목(중국) 25.1분기.pdf	원문보기
3	ISSUE REPORT 수출증가품목(베트남) 25.1분기.pdf	원문보기
4	ISSUE REPORT 수출증가품목(일본) 25.1분기.pdf	원문보기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

트럼프 2기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¹⁾

품목	트럼프 2기 추가관세						기존 적용 관세					
	원산지	근거규정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²⁾	IEEPA (미약-이민)	IEEPA (상호관세)	총 관세	통상법 제301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한국		25%		-		25%	-				
	중국		25%		20%		45%	(전기차) 100%	+	기본 세율 또는 FTA 협정 세율		
	캐나다 멕시코	USMCA 총족	0%	50%(철)/50%(알)			0%(+50%)	-	+			
		USMCA 미총족	25%				25%	-	+			
철강-알루미늄	한국			50%(철)/50%(알)	-		50%	-				
	중국			50%(철)/50%(알)	20%		70%	25%	+	기본 세율 또는 FTA 협정 세율		
	캐나다 멕시코	USMCA 총족		50%(철)/50%(알)			50%	-	+			
		USMCA 미총족		50%(철)/50%(알)			50%	-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한국			50%(철)/50%(알)	-	10%	60%	-				
	중국			50%(철)/50%(알)	20%	10%	80%	25%	+	기본 세율 또는 FTA 협정 세율		
	캐나다 멕시코	USMCA 총족		50%(철)/50%(알)			50%	-	+			
		USMCA 미총족		50%(철)/50%(알)			50%	-	+			
그 외 제품	한국				-	10% (+15% 유예중)	10%					
	중국				20%	10% (+115% 유예중) ³⁾	30%					
	베트남					10% (+36% 유예중)	10%					
	캐나다 멕시코	USMCA 총족					0% * (캐) 에너지 자원 10% Potash(칼륨) 10%	0% * (캐) 에너지 자원 10% Potash(칼륨) 10%	+	통상법 제301조	+	기본 세율 또는 FTA 협정 세율
		USMCA 미총족				25%		25%	+		+	

- 본 현황표(2025.6.13 기준)는 미국 CBP Notice 2025-09066 (90 FR 21487) 및 CSMS #65236574를 기반해, 트럼프 2기에서 추가되고 있는 관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작성되었음. 트럼프 2기 추가 관세는 기존에 적용되던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임
- 철강제품(50%), 알루미늄 제품(50%), 철강 파생상품(50%), 알루미늄 파생상품(50%) 각각 부과 대상을 규정 -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만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비철강 및 비알루미늄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232조에 따른 관세가 아닌 상호관세를 부과
- 대중국 상호관세 34% 발표(2025.4.2), 상호관세 84%로 인상(2025.4.9), 상호관세 125%로 재산정(2025.4.10), 미-중 합의로 상호관세율을 10%로 하고 나머지 115%는 유예중(2025.5.12)



1. 트럼프 2기 추가 관세의 종류 (발표일 기준)

관세 분류	근거규정 및 발표일
IEEPA [캐나다, 멕시코 마약·이민 관세]	행정명령 14193호(캐) 및 14194호(멕시코) (2025년 2월 1일)
IEEPA [중국 마약·이민 관세]	행정명령 14195호 (2025년 2월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관세]	포고령 10896호 (2025년 2월 10일), 포고령 11012호 (2025년 6월 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포고령 10895호 (2025년 2월 10일), 포고령 11012호 (2025년 6월 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포고령 10908호 (2025년 3월 26일), 행정명령 14289호 (2025년 4월 29일)
IEEPA [상호관세]	행정명령 14257호 (2025년 4월 2일) * 2025년 7월 8일까지 90일간 발효 유예

2. 추가관세 대상품목의 종류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령 10908에 따른 품목⁴⁾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 대통령 포고령 9704, 9705, 9980, 10895, 10896에 따른 품목⁵⁾
- 에너지 자원 : CSMS(CBP 고시) #65054354에 열거된 품목
- 포타시(potash) : 행정명령 14197호에 따른 관세율 조정 품목
- 영국 : 미-영 무역협정(EPD, 25.5.8.)으로 영국산 자동차 관세 완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0%(6.4.부터 25%), 항공기 부품 관세 0%
- 러시아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00% 추가 관세 부과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10% 제외 품목



- 캐나다, 멕시코산 물품(USMCA 포함)
- 50 USC 1702(b) - IEEPA 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예외조항 - 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
- Executive order 14257 Annex II 에 제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관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품목

4) 관세청에서 미국 관세부와 대상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미국세번(HTSUS)·한국세번(HSK) 연계 관세율표를 제공하고 있음

5) 관세청에서 미국 관세부와 대상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미국세번(HTSUS)·한국세번(HSK) 연계 관세율표를 제공하고 있음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 품목
- 미국 관세율표(HTSUS) 2열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되는 무역 상대국의 모든 제품 (i.e., 벨라루스, 쿠바, 북한, 러시아)
- 기타 명시된 품목(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향후 관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 반도체 및 의약품·의약품 원료에 대한 조사 진행 중(2025.4.1.~))
- 50 U.S.C. § 1702(b)에 명시된 품목(개인 통신, 인도적 기부, 정보 및 정보 자료의 수출입, 여행과 관련된 거래 등)

4. 관세 누적



행정명령 14289, 11012 및 CBP Notice 2025-09066 (90 FR 21487) / CSMS #65236574

- 제232조(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나머지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 다만, ①캐나다 또는 멕시코산의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0%) 시, 다음 우선순위인 제232조(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② 중국산 물품인 경우 IEEPA(마약·이민)에 따른 관세 누적 부과
- 제232조(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일 경우, 캐나다·멕시코산은 IEEPA (마약·이민) 관세 누적 부과 대상이 아님
- IEEPA(마약·이민)에 따라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은 IEEPA(상호관세), 중국산 적용 IEEPA(마약·이민)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
- 제232조(철강 및 알루미늄)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 중국산은 IEEPA (마약·이민)에 따른 관세 누적 부과함. 그러나 캐나다·멕시코산의 경우 IEEPA 누적 적용 대상 아님
- 제232조(철강) 및 제232조(알루미늄) 관세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ex. 알루미늄과 철강을 모두 함유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각각 성분 함유량에 대해 각 50% 관세 부과)
- USMCA 특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제232조(자동차), 캐나다·멕시코산 및 중국산 IEEPA(마약·이민), IEEPA(상호관세)에 따른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제232조(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무역법 제301조, 상계관세, 반덤핑관세는 위에 나열된 종류의 관세와 별개의 것임



트럼프 2기 미국 관세부와 현황 일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2기),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2월 3일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30일간 유예
2월 4일	미국, 중국에 추가 10% 관세(마약·이민 IEEPA) 발효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예고
2월 26일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발효. 대 중국 관세 10% 추가돼 총 20% 관세(마약·이민 IEEPA) 적용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 1개월 면제 발표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 (단, 캐나다 에너지 및 칼륨 제품 10%)
3월 9일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3월 12일	미국,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효
3월 14일	캐나다,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 요청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발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에 4월 3일부터 25% 관세(제232조) 부과 발표
4월 1일	미국, 제232조 근거하여 반도체·제조 장비 및 의약품·원료에 대한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개시(4월 16일부터 21일간 의견 수렴, 270일 내 조사보고서 제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4월 5일부터 부과하고,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한 국가별 관세를 4월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 발표(해방의 날) 명명. 주요국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
4월 3일	제232조에 근거해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4월 4일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추가 보복관세 부과 예고
4월 5일	美, 전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효
4월 8일	미국,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중국에 대해 누적 104% 관세 부과 예고
4월 9일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맞불 관세 84%로 인상,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90일간 유예 전격 발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누적 145%로 인상
4월 12일	미국, 스마트폰·컴퓨터·메모리칩·반도체 제조장비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4월 22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가공 핵심광물 및 중·대형 트럭, 부품 수입의 안보 관련 영향 조사 착수
5월 2일	중국·홍콩 소액 면세 기준 폐지
5월 4일	트럼프 대통령, 해외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 발표
5월 9일	미국·영국 무역합의 발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하고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폐지, 영국에 대한 10% 상호관세는 유지. 영국은 농산물 등 시장 개방키로
5월 10~11일	미국·중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5월 12일	미국·중국, 상대국에 대한 관세 각각 115%포인트 인하 발표(대중 관세 145%→30%, 대미 관세 125%→10%, 8월 12일까지 90일간 유효)
5월 14일	미국,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 원) 미만 소액 소포 관세 120%에서 54%로 인하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에 50% 관세 부과 경고, 애플에 최소 25% 관세 경고하며 아이폰 미국 내 생산 촉구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 EU에 부과 경고한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5월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IEEPA) 시행 금지
5월 29일	미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5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에서 50%로 인상 발표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 서명
6월 4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효
7월 2일	미국, 베트남과 무역합의 발표. 베트남산 수입품 20% 단일관세(기존46%), 환적물품 40% 고율관세 부과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 연기 및 한국, 일본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 통보.

